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보

선	기관의 장
람	

제608호

2007년 11월 12일 월요일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63호 주택재건축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 3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64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4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65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5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66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6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67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7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68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8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946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947호 신조공인 공고 14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948호 공고문(확인서발급신청사실) 16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949호 공고문(확인서발급신청사실) 17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950호 공고문(확인서발급신청사실) 18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951호 공고문(확인서발급신청사실) 19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952호 공고문(확인서발급신청사실) 20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953호 공고문(확인서발급신청사실) 21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954호 공고문(확인서발급신청사실)	2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955호 공고문(확인서발급신청사실)	23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958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4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978호 인천광역시서구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8

고 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63호

주택재건축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대영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 인천 서구 가좌동 329-5번지 외8필지(3,874.00㎡)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07년 11월 12일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등 건축계획

- ① 대지면적 : 3,874.00㎡
- ② 건축면적 : 912.13㎡(건폐율 : 23.54%)
- ③ 연 면 적 : 12,632.77㎡(용적률 : 249.22%)
- ④ 사업규모 : 지하1층 / 지상14층 / 1개동 / 101세대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조합원 분양 : 아파트 41세대
(73.14㎡: 24세대, 84.23㎡: 11세대, 84.86㎡: 6세대)
- 일반 분양 : 아파트 60세대
(44.3㎡: 1세대, 73.14㎡: 43세대, 73.8㎡: 9세대, 84.23㎡: 3세대, 84.86㎡: 4세대)
- 근린생활시설 : 224.20㎡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 - 64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 업 명 : 민영아파트 건립공사

2. 사업주체 : (주)한국토지신탁 대표 김명섭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서구 오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79블럭 1~8롯트

나. 대지면적 : 26,998.50㎡

다. 연 면 적 : 77,427.971㎡

라. 사 업 비 : 216,500,000,000원

마. 사업규모 : 지하2층 지상15층 6개동 418세대

4. 사업기간 : 2007.11 ~ 2010.12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변경사항 없음”

6. 변경사항

○ 단위세대 · 지하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 관리동 면적변경

- 건축면적 증가(25.845㎡), 연면적 증가(162.940㎡)

- 건폐율 증가(0.09%), 용적율 증가(0.06%)

- 세대내부 실행태 및 구획변경

- 조경면적 증가(0.37%)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 - 65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 업 명 : 민영아파트 건립공사

2. 사업주체 : (주)한국토지신탁 대표 김명섭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서구 오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81블럭 1,3롯트

나. 대지면적 : 26,336.10㎡

다. 연 면 적 : 73,245.356㎡

라. 사 업 비 : 212,200,000,000원

마. 사업규모 : 지하2층 지상15층 7개동 413세대

4. 사업기간 : 2007.10 ~ 2010.12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변경사항 없음”

6. 변경사항

○ 단위세대 · 지하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 관리동 면적변경

- 건축면적 증가(25.845㎡), 연면적 증가(162.940㎡)

- 건폐율 증가(0.09%), 용적율 증가(0.06%)

- 세대내부 실행태 및 구획변경

- 조경면적 증가(0.37%)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 - 66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 업 명 : 민영아파트 건립공사

2. 사업주체 : 현대주택건설 대표 김종호 외 10인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서구 검단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46블럭 2, 4롯트

나. 대지면적 : 4,494.90㎡

다. 연 면 적 : 10,506.3453㎡

라. 사 업 비 : 23,930,999,000원

마.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10층 1개동 799세대

4. 사업기간 : 2007.10 ~ 2009.10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변경사항 없음”

6. 변경사항

○ 단위세대 · 지하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 관리동 면적변경

- 건축면적 증가(25.845㎡), 연면적 증가(162.940㎡)

- 건폐율 증가(0.09%), 용적율 증가(0.06%)

- 세대내부 실행태 및 구획변경

- 조경면적 증가(0.37%)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 - 67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 업 명 : 민영아파트 건립공사

2. 사업주체 : 현대주택건설 대표 김종호 외 10인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서구 검단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44블럭 25-1롯트 외 15필지

나. 대지면적 : 4,304.20㎡

다. 연 면 적 : 9,764.4980㎡

라. 사 업 비 : 22,879,000,000원

마.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10층 2개동 78세대

4. 사업기간 : 2007.10 ~ 2009.10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변경사항 없음”

6. 변경사항

○ 단위세대 · 지하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 관리동 면적변경

- 건축면적 증가(25.845㎡), 연면적 증가(162.940㎡)

- 건폐율 증가(0.09%), 용적율 증가(0.06%)

- 세대내부 실행태 및 구획변경

- 조경면적 증가(0.37%)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 - 68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 업 명 : 민영아파트 건립공사
2. 사업주체 : 와이제이건설(주) 대표 황재순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서구 검단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4블럭
 - 나. 대지면적 : 29,101.3㎡
 - 다. 연 면 적 : 102,900.3772㎡
 - 라. 사 업 비 : 273,967,285,000원
 - 마. 사업규모 : 지상15층 7개동 409세대
4. 사업기간 : 2007.10 ~ 2010.3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가. 건축법 제15조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나.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 다.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946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전부개정 및 일부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개정 및 되고,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을 개정함 (제3조, 제12조, 제13조)
-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 시설까지 확대 (제12조)
- 조례에 위임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을 구분하여 규정함 (제15조)
- 조례명 정비계획 및 법령명 표기의 통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 주소: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3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체육과(전 화 : 032-560-4341, 팩스 : 032-560-4349, 이메일 : imstone@seo.incheon.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고시·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5조 제2항”으로 하고, 제2호 중 “법 제11조”를 “법 제9조”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를 “법 제5조 제2항 및 영 제12조”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영 제12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한다.

제13조 제1항 중 “영 제24조제1항 및 영 제25조”를 “영 제12조 제1항 및 영 제13조”로 하고, “법 제11조”를 “법 제9조”로 하며,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5조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로 하고, “영 제25조제2호”를 “영 제12조 제5항의”로 하며, “1,000분의 1로 한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2. 영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축물
 -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u>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u> 제3조(설치 및 기능) (생략) 1. 법 제9조제2항 규정의 대형건축물에 대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2. 법 제11조 규정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품 설치의무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u>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u>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u>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u>로 한다. 1. <u>공동주택 (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u> 2. <u>업무시설</u> 3. <u>숙박시설</u> 4. <u>판매시설</u> 5. <u>위락시설</u> 제13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등) ① 구청장이 영 제24조제1항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	<u>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u> 제3조(설치 및 기능) (현행과 같음) 1. 법 제5조 제2항 _____ 2. 법 제9조 _____ 제11조(수당 및 여비) _____ 「<u>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u>」 _____ 제12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_____ 법 제5조 제2항 및 영 제12조 _____ 「<u>건축법 시행령</u>」 제3조의 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영 제12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_____ 1.~ 5. <삭제> 제13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등) ① _____ 영 제12조 제1항 및 영 제13조 _____ 법 제9조 _____ 제15조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현행	개정
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건축비용의 비율 _____ _____.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5조제2호 규정에 의한 비율은 1,000분의 1로 한다. 1. <신설> 2. <신설>	제15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12조 제5항의 _____ 각호와 같다. 1. 영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2. 영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축물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제2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수당 및 여비) _____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_____ _____.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947호

신조공인 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의 인영을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인신조 사유

- 검단4동 분동에 따른 선거업무용 공인신조

2. 신조공인의 최초 사용일 : 2007. 11. 21

3. 신조공인명 및 인영 : 별첨참조

신조공인 공고

신 조 공인명	규격(cm)	신 조 공인인명	비 고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선거전용17)	2.4cm ² ×2.4cm ²		검단4동 분동에 따른 선거업무용 공인제작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948호

공 고 문
(확인서발급신청사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① 부동산의 표시 : 인천 서구 마전동 산168-15 (임야 331㎡)
-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 (한글)소 병 열 (한문)
- ③ 대장상 소유자주소 : 인천 남동구 주안동 1436
- ④ 신청인성명 : (한글) 박 명 선 (한문) 朴 明 善
- ⑤ 신청인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56-6
- ⑥ 취득사유 : 1994년 2월 3일

소병열 지분 15/331 매매

- ⑦ 공고기간 : 2007년 11월 6일 - 2008년 1월 5일 (2개월)
- ⑧ 통지불가사유 :
- ⑨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7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949호

공 고 문
(확인서발급신청사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① 부동산의 표시 : 인천 서구 오류동 585(전 1,240㎡)
-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 (한글)1.신 맹 수 2.신 기 영 3.신 회 수 4.신 기 수
(한문)
- ③ 대장상 소유자주소 : 1. 김포군 통진면 가현리 266
2. 김포군 점단면 대곡리 300
3. 김포군 점단면 대곡리 134
4. 김포군 점단면 대곡리 199
- ④ 신청인성명 : (한글) 신 장 균 (한문) 申 莊 均
- ⑤ 신청인주소 : 인천 서구 대곡동 491-3
- ⑥ 취득사유 : 1974년 10월 20일 매입
- ⑦ 공고기간 : 2007년 11월 6일 - 2008년 1월 5일 (2개월)
- ⑧ 통지불가사유 : 대장상 소유자 사망 및 주민번호 불명
- ⑨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7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950호

공 고 문

(확인서발급신청사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① 부동산의 표시 : 인천 서구 오류동 579(전 132㎡)
-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 (한글)1.신 맹 수 2.신 기 영 3.신 회 수 4.신 기 수
(한문)
- ③ 대장상 소유자주소 : 1. 김포군 통진면 가현리 266
2. 김포군 검단면 대곡리 300
3. 김포군 검단면 대곡리 134
4. 김포군 검단면 대곡리 199
- ④ 신청인성명 : (한글) 신 상 철 (한문) 申 相 澈
- ⑤ 신청인주소 : 인천 서구 대곡동 136
- ⑥ 취득사유 : 1980년 3월 20일 매입
- ⑦ 공고기간 : 2007년 11월 6일 - 2008년 1월 5일 (2개월)
- ⑧ 통지불가사유 : 대장상 소유자 사망 및 주민번호 불명
- ⑨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7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